

제25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2025. 2. 17.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477호로 2025년 2월 3일 차인영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다. 사업주의 책무, 시행계획, 실태조사(안 제4조 ~ 제6조)

라. 지원사업 등, 업무의 위탁(안 제7조 ~ 제8조)

마. 홍보,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안 제9조 ~ 제11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2025.02.04.~2025.02.11.)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제명은 개정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맞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상위법과의 연계성을 명확히 함
- 안 제1조(목적)는 법 개정취지에 맞추어 경력단절여성등 뿐만 아니라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도 주요 정책 대상에 포함하고자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내용도 규정
- 안 제2조(정의)는 법의 정의가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도록 법의 정의를 따른다고 규정하여 입법경제성을 제고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는 법 제3조에 맞추어 일부 조문을 개정
- 안 제4조(사업주의 책무)는 법 제4조에 근거하여 규정
- 안 제5조(시행계획), 안 제6조(실태조사) 및 안 제8조

(업무의 위탁), **안 제10조(협력체계 구축)**는 일부 조문 내용을 개정하였으나 기존 조례와 취지는 같음

- **안 제7조(지원사업 등)**는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과 지원사업 내용을 법 제3장에서 규정한 예방 시책에 맞추어 개정

기존 조례	본 전부개정조례안
<p>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법에서 삭제됨)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 취업 지원 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한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p>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0조에 따른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신설) 2. 법 제12조에 따른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상담 사업(신설) 3. 법 제1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사업(기존 조례 제2호) 4. 법 제14조에 따른 직업적응을 위한 일경험 지원 사업(기존 조례 제3호) 5.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기존 조례 제4호) 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기존 조례 제5호) 7.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기존 조례 제7호) <p>※ 기존 조례 제6호는 법에서 규정된 예방시책에 없으며, 본 조례안 안 제7호에 포괄될 수 있음에 따라 삭제한 것으로 보임.</p>

- **안 제9조(홍보)**는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구민 등의 이해와 관심 제고 및 경제활동 촉진 등을 위해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은 여성의 임신·출산·육아 부담에 따른 경력단절과 노동시장 이탈, 하향취업 그리고 재취업의 어려움 등의 원인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0% 수준에 불과함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자아실현,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제정(2008.06.05. 시행 2008.12.06.)되었으나,
- 여성의 근본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결혼·임신·출산 등 생애사적 사건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뿐만이 아니라,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도 주요 정책대상에 포함하여 **경력단절 예방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개정(2021.12.07.시행 2022.06.08.)되었음.
- 한편, 여성가족부 1)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평생동안 출생·돌봄 등 이유로 ▲경력단절 경험 42.6% ▲평균 발생연령 29세 ▲경력단절 기간 8.9년으로 나타났으며,
- 경력단절 후 일자리 변화는 다음 표와 같으며, 재취업 후 첫 일자리 임금은 경력단절 이전의 84.5%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는 등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하더라도 고용의 질이 저하됨에 따라 재취업 촉진과 함께 **경력단절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1) 여성가족부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 경력단절 전후 일자리 변화 > (단위 : %포인트(p), 이하 '%p')

구분	경력단절 이전 대비 비중 하락	경력단절 이전 대비 비중 상승
산업	제조업(13.2%p), 교육서비스업(2.6%p)	숙박·음식점업(9.0%p), 도·소매업(5.9%p)
직업	사무직(23.7%p), 전문가(5.2%p)	판매직(14.0%p), 서비스직(12.5%p)
지위	상용근로자(36.7%p)	임시근로자(9.4%p), 고용원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16.4%p)
근로형태	전일제 일자리(16.9%p)	-

- 한편, 2022년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대한민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남성과 같아지면 국내총생산(GDP)이 지금보다 7% 이상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였지만,
- 2023년 한국 여성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38개 회원국 중 31위로 20년간 하위권(26~31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등 생산 인구감소 등으로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고, 실제 기획재정부²⁾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와 축진은 침체된 국가·지역 경제발전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이에 따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경제활동참여 촉진을 통해 우리 구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체계의 통일성 및 정합성 제고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한편, 작년 우리 구에서는 여성취업 관련하여 진행한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음. 다만, 일자리경제과 박람회 지원대상은 구직을 희망하는 구민 전체임.

2) 기획재정부 <2025년 경제정책방향>(2025.01.02.)

<보육지원과> 경력단절여성 지원 프로그램 (정리수납전문가 2급 과정)

□ 교육 개요

- 기 간 : 2024. 11. 7. ~ 11. 26. / (화·목) 10:00~13:00 [6회, 18시간]
- 대 상 : 영등포구 거주 여성 20명
- 강 사 : 양OO(서울ymwa 정리수납전문가 과정 강사)
- 내 용 : 공간별(주방, 거실, 현관 등) 정리수납의 이해 / 이론, 실습
 ※ 정리수납전문가 2급 (민간)자격증 취득 연계 과정
- 예 산 : 2,400천원

<일자리경제과> 희망·행복·미래 취업박람회

□ 박람회 개요

- 일 시: 2024. 10. 15.(화) 13:00~17:00
- 장 소: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1층 그랜드볼룸(여의대로 24, 舊 전경련회관)
- 주 관: 영등포구, 한경협 중장년내일센터,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 참 여: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구인업체, **취업희망 구직자**

□ 행사부스 운영

구 분	구 성	주요내용
기업채용관 (25개)	-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1:1 현장면접 실시 · 중장년·여성 등 채용계획이 있는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1:1 현장면접 진행 · 참여기업 업종 및 특성에 따라 부스 분류·구성하여 운영	
취업지원관 (4개)	영등포구일자리플러스센터 한경협 중장년 내일센터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영등포구여성인력개발센터	구직상담 및 기관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안내
부대행사관 (10개)	- 이력서·면접컨설팅 등 취업역량 강화 지원 및 다문화가족·어르신·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기관 부스 구성	
	취업토탈서비스	맞춤형 구인기업 현장안내 및 이력서 컨설팅
	이력서 사진촬영(2개소)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
	퍼스널 컬러 진단	퍼스널 컬러 진단 및 면접 활용방법 상담
	영등포구가족센터	외국인·다문화가족 취업 진로설계 컨설팅
	영등포시니어클럽	어르신 구직 상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등 홍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장애인 구직자 상담, 장애인고용공단 사업(고용 장려금) 등 홍보
	건설근로자취업지원 서울센터	건설업 특화 취업정보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취약계층 금융·재무 상담, 채무조정 상담
창업 비즈니스센터	창업 관련 컨설팅	

참고 자료

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

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3. 26.>

1.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단절 현황과 전망

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

3의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의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

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일자리창출 지원 등) ① 정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연령, 경력, 학력 등에 적합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별임금 격차 축소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구인·구직 정보의 수집 등)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과 관련된 구인(求人)·구직(求職)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구직자·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직업교육훈련)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지역·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6.>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일경험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일경험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일경험 지원과 취업연계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2.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3.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4. 그 밖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2021.9.30., 2022.10.17.>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9.30., 2022.10.17., 2024.7.15.>

1.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단절 현황과 전망
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
- 3의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의 확대 및 재

원조달 방안

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시행결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